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 3 차 총무위원회 (2016. 12. 1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최종 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6. 11. 1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6. 11. 21.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각 부서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거창군에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거창군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함.

3. 2017년도 기금개요

-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 자금 운용체계를 총괄부서와 운영부서로 이원화하여 책임성·투명성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음
 -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 운용부서 : 각 기금관리운용 부서
 -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

4.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016년말 현재액 ①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말 조성액 ④=①+②-③	증감
		수입 ②	지출 ③		
합계 (4개)	11,975,286	304,229	448,699	11,830,816	△144,470
사회복지기금	3,865,740	152,248	178,199	3,839,789	△25,951
식품진흥기금	55,632	15,287	3,000	67,919	12,287
중소기업육성기금	6,464,509	110,500	240,000	6,335,009	△129,500
아름예술포진흥기금	500,274	7,504	7,500	500,278	4
체육진흥기금	1,089,131	18,690	20,000	1,087,821	△1,310

5. 검토의견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P23)

- 사회복지기금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음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매년 이자 수입액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에서 지원하며,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의 1인당 지원 기준액은 중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40만원, 중학교 특별장학생과 고등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각각 60만원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는 80만원을 지급
 -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자활공동체 및 개인의 사업자금 대여

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함

-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등을 지원
 -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수의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익하고 호응이 좋은 사업과 노인의 심심단련 및 건전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지원
 - 여성발전 지원사업은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을 지원함.
-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 말 현재액은 3,865,740천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52,248천원, 지출 178,199천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839,789천원으로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치하고 있음

■ 민원봉사실 식품진흥기금[p35]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함
-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과, 100백만원 기금 자금 적립

될 때 까지 보조사업만 추진

-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말 55,632천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5,287천원, 지출은 3,000천원으로 2017년말 조성액은 67,919천원으로 기금은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p43]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에 지원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으로 하며
- 군내 주사무소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고 국가시책을 수행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업체가 그 대상이 되겠음
-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 말 현재액은 6,464,509천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10,500천원, 지출 240,000천원임.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335,009천원으로 기금은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문화관광과 아림예술제진흥기금[p49]

-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은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에 따라 향토 문화·예술축제인 아림예술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보조금과 아림예술제 행사 잉여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하고 있음
- 지원기준은 매년 아림예술제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행사비 등 지원
-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 말 현재액은 500,274천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7,504천원, 지출 7,500천원임.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00,278천원으로 기금은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기금[p57]

- 체육진흥기금은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의거 거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하였으며,
- 재원조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이며
- 지원기준은 거창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영역으로 함
- 지원대상은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우수선수 육성 사업, 군민 체육대회 개최,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을 지원함.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말 현재액은 1,089,131천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8,690천원, 지출 20,000천원임.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87,821천원이고. 기금은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치 관리하고 있음

■ 총괄 검토의견

- 기금 성과분석 결과, 반영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기금 사업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운용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과 ‘적립성 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미미한 경우 기금 존속 여부 검토 필요
- 지방기금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중인 기금으로서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기금은 조례개정을 통한 지방기금법의 취지를 반영 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효율성 제고
-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권장
(개별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과 예산을 절감)
- 모든 기금은 매년 성과 분석을 시행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6.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도비 보조금
2. 군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사업
2. 여성복지사업
3.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4.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5. 생활안정 지원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용도별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② 기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의 수익범위에서 집행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각 기금의 용도별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창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4.)

제 2조 (기금의 조성)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8. 3. 24.)

1. 법 제65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 3조 (기금의 사용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식품위생 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광역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8. 3. 24.)

1.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3.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4. 식품위생교육 및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

□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2.8.06)

제 2조 (기금의 설치) 군수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2.8.06)

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2.8.06)

제 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8.06)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2.8.06)

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 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8.06)

1.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 재원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2.8.06)

제 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 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12.8.06)<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1. 기금운용관 : 기업지원과장<개정 2009.12.30 조례 제1950호 부칙 제2조제2항>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25항>

2. 기금출납원 : 기업지원담당주사<개정 2009.12.30 조례 제1950호 부칙 제2조제2항>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25항>

③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7조 (회계) 기금의 경리절차는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 8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 등이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원(이하"자금"이라 한다)을 융자받은 경우 제4조제1호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개정 2012.8.06)

제 10 조 (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가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1. 경영안정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 현대화자금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개정 2012.8.06)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자금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아림제진흥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2.8.06)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아림예술제(이하 “아림제”라 한다)란 향토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국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림예술제위원회가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말한다.(개정 2012.8.06)

② “아림예술제위원회(이하 “아림제위원회”라 한다)”란 아림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2.8.06)

제 3조 (기금의 조성) ①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2.8.0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아림제 행사 잉여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2.8.06)

② 군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2.8.06)

제 4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계정과목 : 아림제 진흥기금)에 납입 관리한다.(개정 2012.8.06)

②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2. 13)

제 5조 (기금의 용도) (개정 2012.8.06)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 할 수 없다.

1. 아림제 행사추진
2. 그 밖에 아림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② 이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제 6조 (기금운용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아림제위원회로부터 아림제의 사업 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9. 2. 13)(개정 2012.8.06)

제 8조 (기금지급 및 결산보고) (조이동 2012.8.06)

① 군수는 아림제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아림제위원회에 지급한다.

② 아림제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 출납폐쇄후 80

일 이내에 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한다.(개정 2012.8.06)

③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 2. 13)(개정 2012.8.06)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조신설 2012.8.06)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
5.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은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2. 우수선수 육성 사업

3. 군민체육대회 개최

4. 도민체육대회 참가

5.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액을 우선 집행하되 적립기금 원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